

# < 2022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교재순 >

구민희 관세사

## ★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 (기존 교재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

###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단, 개정의 중요도이지 내용의 중요도는 아님.

###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 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 교재 55페이지 ★ - 구매대행업자 정의 명확화 (정리)

### <변경 전>

③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a.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 b.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 <변경 후>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a.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b.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 ● 교재 106페이지 ★★★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강화 (신설)

### (9) 과태료 부과 후 미제출시 조치

#### ① 재 제출요구

세관장은 상기(1)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1억원이하)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출기한

상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미제출시 조치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재 146페이지 ★ - 신설**

⑬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2)-1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2)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3)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의 유효기간**

현행과 같음

● **교재 163페이지 ★ - 신설**

⑬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2)-1 **상계관세의 재심사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2)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교재 192페이지 ★★★ - 용도세율 절차 개선 (변경)**

<변경 전>

2.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조정된 잠정세율,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중 낮은 세율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이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변경 후>

2.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조정된 잠정세율,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교재 231페이지 ★★★ -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신설)

### <변경 전>

#### 4) 보정가산금

- \* 세관장은 보정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 \* 금융회사의 정기에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1천분의 1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변경 후>

#### 4) 보정가산금

- \* 세관장은 보정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조(가산세)에도 불구하고**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 \* 금융회사의 정기에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1천분의 1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4-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징수

상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 교재 239페이지 ★★ -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 (변경)

### <변경 전>

#### 2) ①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사유

- ①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②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품목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변경 후>

#### 2) ①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사유

- ①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②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품목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교재 241페이지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범위 확대 (변경)**

<변경 전>

(2) 체납액 100만원 미만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일부 면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납부지연가산세 (가.)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2) 체납액 150만원 미만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일부 면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납부지연가산세 (가.)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재 267페이지 ★★★ - 명칭(변경)**

<변경 전>

② 토지 및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변경 후>

② 토지 및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교재 303페이지 ★★★ - 개인구매물품 관세환급대상 확대(신설)**  
- 2022년 4월1일 시행

<변경 전>

1. 의의 및 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환급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변경 후>

1. 의의 및 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3) **법 제241조제2항(간이통관)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환급

여행자가 **법 제96조제2항(여행자휴대품 등 감면)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2)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교재 318페이지 ★ - 정부용품 면제대상 명확화(정리)

<변경 전>

② 군수품 및 국가원수 경호물품(통상품 제외)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을 제외한다.

<변경 후>

② 군수품(통상품 제외)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1 국가원수 경호물품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교재 327페이지 ★★ - 항공기부분품 감면기간 3년 연장(변경)

<변경 전>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변경 후>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교재 334페이지 ★★ - 정리

### <변경 전>

- (6)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 <변경 후>

- (6)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상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 현지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일 것
    - 나.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퍼센트 이상일 것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 (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직접 수출할 것.

## ● 교재 336페이지 ★ - 변경

### (2)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① 오염물질(소음, 진동)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폐기물 처리(재활용)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③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 100분의 50

## ● 교재 337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기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재수출불이행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 <변경 후>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기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재수출불이행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 ● 교재 386페이지 ★ - 정리

### <변경 전>

#### 2. 과세전 통지

세관장은 경정과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액 징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1) 잠정가격신고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 (2)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3)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변경 후>

#### 2. 과세전 통지

세관장은 경정과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액 징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잠정가격신고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 (2)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3) 제97조제3항(재수출면세추징사유)(제98조제2항(재수출감면추징사유))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조건부감면세추징사유)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 교재 442페이지 ★ - 정리

### <변경 전>

#### (3) 하역 신고(확인)

국제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경 후>

국제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교재445~446페이지★★-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신설)

### <변경 전 ---> 변경 후>

#### 4. 선박(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 (1) 의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환적하여야 한다.

-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

##### (1) 의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 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환적하여야 한다.

-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변경 전 ----> 변경 후>

(3) 외국물품의 적재 등

상기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

(3) 외국물품의 적재 등

상기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변경 전 ----> 변경 후>

(4) 선박용품의 범위

상기 (1) 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

(4) 선박용품의 범위

상기 (1) 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 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 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변경 전 ----> 변경 후>

(5) 관세의 징수

(2)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상기(1)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

(5) 관세의 징수

(2)에 따른 외국물품이 상기(1)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 교재 491페이지 ★★★ - 과징금 분할납부 인정 (삭제)

☑ 시행령 제285조의7 (과징금의 납부)

⑤ 분할납부 금지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삭제

● 교재 513페이지 ★★★ -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변경)

<변경 전>

(7)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기획재정부장관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재 537페이지 ★ - 삭제

(5) 매각대행

1) 매각대행 사유

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②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 삭제

③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재 537페이지 ★★ - 의무이행여부확인을 위한 조사근거마련 (신설)

2. 의무 이행의 요구(법 제227조)

(1) 의의

현행과 같음

(2) 의무이행의 면제

현행과 같음

(3) 의무이행 여부 조사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통관 후 유통이력조사)을 준용한다.

● 교재 580페이지 ★★ -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신설)

3. 통관의 보류

(1) 의의

세관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1)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법 제245조에 따른 수출입반송신고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4)-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6)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 교재 600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2.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물품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경 후>

#### 2.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물품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교재 607~609페이지 ★ - 삭제

### 6. 원산지확인위원회 - 전체 삭제

## ● 교재 613페이지 ★ - 변경

## VIII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 1. 의의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 ● 교재 642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1. 의의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변경 후>

#### 1. 의의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 교재 643페이지 ★★★ - AEO제도 예비심사 근거 마련(신설)

### <변경 전>

#### 2. 공인심사

##### (1) 심사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변경 후>

#### 2. 공인심사

##### (1) 심사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1)-1 예비심사요청

상기 (1)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1)-2 예비심사결과통보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1)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 교재 644페이지 ★★★ - AEO제도 혜택확대 및 혜택정지 법령화(신설)

### <변경 전>

#### 3.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변경 후>

#### 3.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3.-1 통관절차상의 혜택 정지 및 시정명령

##### (1) 통관절차상의 혜택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2) 통관절차상의 혜택정지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교재 644페이지 ★★★ - AEO제도 공인취소사유 법령화(신설)

### <변경 전>

#### 5.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변경 후>

#### 5.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AEO제도 신설법규(법 제255조의2~제255조의7) : 신설 및 승격

### 1.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3.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5.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6.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 ● 교재 649페이지 ★★★ - 국제우편물 사전정보제출 의무화(신설) - 2022년 7월1일 시행

#### 2. 통관절차

##### (1) 통관우체국 경유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1)-1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제출 - 이번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략.**

● **교재 692페이지 ★★ -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금지위반시 벌칙(신설)**

<변경 전>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금지위반시 - 등록취소, 6월의 범위내 영업정지 등

<변경 후>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금지위반시 - 등록취소, 6월의 범위내 영업정지 등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교재 694페이지 ★★★ - 다국적기업 자료제출의무위반 제재 강화(신설)**

(3) 과태료 내용

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허위신고죄 등)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1.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의4제7항(상기 과태료 부과후 자료제출요구 30일 이내)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허위신고죄 등)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교재 694페이지 ★ - 처벌수준 완화(변경)**

<변경 전>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위반 /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

<변경 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위반 /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

● **교재 728페이지 ★★ - 관세 통계작성·공표 근거 마련(신설)**

1. 통계의 열람, 교부

관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 (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
- (2)-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재 745~747페이지 ★ - 신설 및 변경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
  
-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 ● 교재 748페이지 ★★ - 부분삭제

### III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8조제4항(매각대행기관)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2항(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55조의2제2항 후단(AEO)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삭제~~
4. 제322조제5항(통계자료및통계의 작성및교부업무)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증계사업자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체신관서의 장
  - \*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 화물관리인
  - \* 운영인
  - \*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
  - \*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 \*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 \*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 심사 지원
  - \*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 마.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자.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